

2021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

1) 접수기간 : '21. 8. 12.(목) ~ '21. 8. 19.(목) 18시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21.8.19.(목) 18시 기준 도착(방문 또는 우편) 사업장까지 신청/접수

2) 선정방법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9월 중 1회 추가 접수 예정

※ [덧붙임1]의 「2021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참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 [붙임2 참조]

-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주소 : (50635)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 온라인 주소 : 클린사업 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

▶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지역2부 ☎ 055-371-7562

4)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한함)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하고 지급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접수 불가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대상 제외

(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5)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은 자금결정일 기준 연 2회 이내로 제한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은 차대번호로 구분, 동일 설비 중복지원 불가

▶ 보조비율 및 지원조건

- (보조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본부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지원조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보조금 지급전까지 안전검사 합격

6) 지원설비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언코일러, 피더 등)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
-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끼임방지 시설(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 지게차 임대업 사업주는 임대업장(출차대기장소 등) 내에서 작업하거나 임차사업장에서 임대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운행·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지게차 신고(등록세, 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지게차 등록차량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제출
 - (전동지게차 등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 납세자(사업주)가 해당 지게차 관련 세금납부 내역이 나오도록 발급된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취득세납부확인서 제출
- 추락방지 시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부(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천장크레인(3톤 미만, “설비구조물 불량” 등의 사유로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설비의 교체 설치 지원,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 ※ 안전인증제도 시행('09.01.01.) 이전에 제작된 것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기동·벽체 등 건물의 보수·보강비용은 지원 불가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등)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 설비(고소작업차 임차료, 추락방지망)
-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안전바, 안전봉)
- 추락예방을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 지게차방호장치,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품, 코로나19방역품목,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채광창안전덮개, 안전블록세트,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설비는 [덧붙임2]의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 참조

[덧붙임1]

2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최우선선정 실시

1 개별점수 산정

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60점	
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15점	
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소업종)	15점	참고1 참조
③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소업종)	10점	단 재해를 높은 사업장 순위 10개씩 소업종 단위로 1점씩 차감참고 참조
④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점	
⑤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근로자 1명당 2점) * 장년근로자(만55세이상), 장애인, 외국인, 청년(15~29세이하)	10점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⑥ 크레인(정격하중 2톤이상), 지게차(좌 입식) • 해당설비 사진제출(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 시 인정	5점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 자율활동 우수항목	50점	
⑦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⑦일터혁신 우수 기업(인증)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40점	각 5점씩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5점	'20~'21년 참여업체
⑨ KOSHA-MS 인증기업	5점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 가점항목(사망사고 감소사업, 고용·산업위aggi역)	+30점	
⑩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점	
⑪ 고용위기 지역 • '20년~'21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10점	김해·밀양·양산지역 해당사항 없음
⑫「산단대개조」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10점	김해·밀양·양산지역 해당사항 없음
계		

② 개별점수에 품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점수로 우선순위 선정

품목	필수노동자·3밀	시저형리프트 방호장치	채광창덮개·안전대 부착설비	기타 고위험설비
가중치	1.2	1.2	1.1	1.0

예시) A사 : 3밀품목 개별점수 63점×1.2 = **75(소수점 절사)**

B사 : 지게차 방호장치 72점×1.0 = **72**

👉 최종순위 : **A사**가 B사 보다 **선순위**

※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품목별 가중치→가점항목(⑩→⑫)→공통항목(①→⑥)→우수항목(⑦→⑨)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 후 지급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불가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 제외

(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참고1】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 배정 점수

업종(소)	점수	업종(소)	점수
무연탄광업	15	기타건설공사	15
암석채굴·채취업	15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15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15	건설기계관리사업	15
쇄석채취업	15	육상화물취급업	15
도정및제분업	15	구역화물운수업	15
조미료(장류포함)제조업및제염업	15	특수화물운수업	15
기타목재및목제품제조업	15	택배업	15
일반제재업	15	퀵서비스업	15
지류제조업	15	항만운송부대사업	15
합성수지제조업	15	벌목업	15
기타화학제품제조업	15	영림업	15
담배재건조및담배제품제조업	15	양식어업	15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15	농업서비스업	15
석회제조업	15	축산업	15
석재및석공품제조업	15	위생및유사서비스업	15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5	하수도업	15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15	음료제조업	10
각종금속의용접또는용단을행하는사업	15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0
철강재제조업	15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10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15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10
원동기제조업	15	금속가공기계제조업	10
용융도금업	15	건설기계또는광산기계및설비품제조업	10
전기도금업	15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10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5	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10
유리섬유제조업	15	기타수제품제조업	10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15	소형화물운수업	10
연마재제조업	15	골판지및종이용기제조업	5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15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5
시멘트제조업	15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5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15	자동차부분품제조업	5
강선건조또는수리업	15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5
콘크리트또는플라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15	항만내의육상하역업	5
벚짚류,가발,수모등의제품제조업	15	자동차에의한여객운수업	5
지류가공제품제조업	15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5
포류및기타피혁제품제조업	15	택시및경차량운수업	5
기타각종제조업	15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5
건축건설공사	15	임대업	5
도로신설공사	15	주한미군	5
기계장치공사	15	그 외 업종	0

【참고2】 경남동부지사 관할 재해다발 위험업종 배정 점수

순번	업종(소)	점수
1	제빙업	10
2	합금철제조업	10
3	철강압연업	10
4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10
5	기타유리제품제조업	10
6	쇄석채취업	10
7	베니어판등제조업	10
8	일반제재업	10
9	철강재제조업	10
10	퀵서비스업	10
11	각종금속의용접또는용단을행하는사업	9
12	소화기및분사기제조업	9
13	기타목재및목제품제조업	9
14	의약품및의약부외품제조업	9
15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9
16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9
17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9
18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9
19	목재건구제조업	9
20	석재및석공품제조업	9
21	농업서비스업	8
22	판유리제조업	8
23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8
24	작물생산업	8
25	택배업	8
26	기계장치공사	8
27	전각항에해당하지않은사업	8
28	농업용기계제조업	8
29	양식기,칼,수공구또는일반금물제조업	8
30	제강압연업	8
31	기타건설공사	7
32	화학비료제조업	7
33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7
34	육제품또는유제품제조업	7
35	금형제조업	7
36	기타각종제조업	7
37	목재가구제조업	7
38	화학섬유제조업	7
39	용융도금업	7
40	건설기계또는광산기계및설비품제조업	7

순번	업종(소)	점수
41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6
42	석유정제품제조업	6
43	특수화물운수업	6
44	빵및과자류제조업	6
45	육상화물취급업	6
46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6
47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6
48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6
49	구역화물운수업	6
50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6
51	지류가공제품제조업	5
52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5
53	선재제품제조업	5
54	축산업	5
55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5
56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5
57	직물업	5
58	금속가공기계제조업	5
59	기타금속재료제품제조업	5
60	유리제품가공업	5
61	표백및염색가공업	4
62	기타섬유제품제조업	4
63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4
64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기타절임식료품제조업	4
65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4
66	방적제사및화학섬유제품제조업	4
67	그외기타기술서비스업	4
68	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4
69	기타식료품제조업	4
70	코팅사업	4
71	건축건설공사	3
72	영림업	3
73	임대업	3
74	소형화물운수업	3
75	목상자,목통류및목용기제조업	3
76	위생및유사서비스업	3
77	전기계측기제조업	3
78	지류제조업	3
79	음식및숙박업	3
80	원동기제조업	3
81	합성수지제조업	2

순번	업종(소)	점수
82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2
83	강선건조또는수리업	2
84	열처리사업	2
85	도정및제분업	2
86	유기화학제품제조업	2
87	인쇄업	2
88	골판지및종이용기제조업	2
89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2
90	자동차부분품제조업	2
91	택시및경차량운수업	1
92	유리섬유제조업	1
93	창고업	1
94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
95	기타화학제품제조업	1
96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
97	철도차량제조또는수리업	1
98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	1
99	도료제품또는유지가공제품제조업	1
100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기계기구제조업	1
그 외 업종		0

지원품목별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게차 방호장치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소속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행·작업하는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등	▶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지게차 등록차량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제출 - (전동지게차 등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 납세자(사업주)가 해당 지게차 관련 세금납부 내역이 나오도록 발급된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취득세납부확인서 제출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품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배달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등 고용사업장 - 타겟업종: 택배업(50110), 퀵서비스업(501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102) 등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등	▶ 휴게실 전용공간이 확보된 사업장 ▶ 컨테이너 설치관련 인허가 사항은 신청사업장에서 반드시 확인 ▶ 건축법, 환경법 등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3밀 작업현장 보유공정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식품제조업 사업장 - 콜센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중분류기준)) *901(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907(전문·보건·교육·여과관련 서비스업), 000(금융 및 보험업) 중 독립된 장소의 운영 사업장 - 물류센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소분류기준)) *50006(창고업), 5007(기타보관업), 50110(택배업)으로 분류된 사업장 - 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중분류기준)) *200(식품제조업) 중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를 보유한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등	▶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당 1대 지원 및 체온계와 병행하여 지원(단독지원 불가)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등	▶ 고소작업대 전체 보유현황 제출(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설비 체크) - 동일 고소작업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실, 파손 시 보조금 반납 조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채광창 안전덮개/ 안전블록세트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u>지붕공사 실적이 있는 사업장 중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u>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전 업종 - 건설업등록증 인정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건설업(5종), 및 전문건설업(29종)등록증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등	▶ 채광창 안전덮개 : 성능 및 제작기준에 부합한 제품에 한함 ▶ 안전블록 세트 - 안전인증품(안전그네 일체형 : 안전대 + 안전블록)에 한함 - 단일품목 지원한도 1,000만원 적용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지붕공사 현장 수당 4EA* 이내 지원 (ex) '20년도 현장수 3개소, '21년도 현장수 2개소 ⇒ 3 × 4EA = 12EA 지원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설비	▶ 밀폐공간을 보유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u>밀폐공간 작업 실적이 있는 사업장 중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한</u>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전 업종 - 건설업등록증 인정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건설업(5종), 및 전문건설업(29종)등록증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인정범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등	▶ 밀폐공간 작업 실적은 해당연도 도급(하도급) 계약서의 계약내용 상 해당작업이 수행된 실적이 있어야 인정